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8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정진욱 · 박균택 · 조인철
박홍배 · 양부남 · 정준호
안도걸 · 최혁진 · 장종태
이재관 · 주철현 · 이병진
이광희 · 김원이 의원
(1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전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생산지와 소비지 간 대규모 · 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부담이 크며,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성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RE100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산업단지와 근접거리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재생에너지 공급·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산업·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을 통해 친환경 산업입지 및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 추진 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지구내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제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부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선정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전력계통의 연계, 부족한 전력의 공급,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산업지구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근로자의 생활·정주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안전·환

경 등 타 법령에 따른 민원의 신속처리,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설계·운영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시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각종 특구·지구 등의 지정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광사업 지원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부터 제61조).

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하. 그 밖에 임직원의 파견 요청,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을 통해 친환경 산업 입지 및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이하 “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이하 “단지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전력망지구”란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산업지구”란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집적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8. “정주지구”란 산업지구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9. “입주기업”이란 제64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허가 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등록 후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말한다.

12.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기본계획,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실시계획, 제6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원칙)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생산·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2. 재생에너지지구·산업지구·정주지구 등이 연계된 복합도시의 조성
3.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 유치 기반 마련

제6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4.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
 5. 제6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6.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7.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입주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
 8.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9.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0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요건)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업·재생에너지공급·정주시설 등의 연계가 용이할 것
4.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을 요청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의 필요성
3.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단지개발사업과 단지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자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8. 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발전지구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개발하는 방식 또는 그 일부를 지정·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또는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산업지구 및 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한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해제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개발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단지연계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
풍력발전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동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산업지구 및 정주지구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산업지구의 공급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과 재투자자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생에너지지구 등의 사업시행자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송전·배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및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결과에 따른 협의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3.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9.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1.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 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3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4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4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개발사업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2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은 재해

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4장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

제29조(재생에너지지구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재생에너지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당 지구에서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이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는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방식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전기 등의 공급

③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공급 가격은 제1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고려한 발전단가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정부는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복수의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지구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기의 구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통한 전력의 거래

⑤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하여 그 초과분의 전기를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및 제5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절차,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재생에너지지구 전력계통연계) ① 송전·배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지구와 연계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신규 전력수요(산업지구 외 전력수요를 의미한다)와 체결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지구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34조(전용 전기공급사업자 미선정시 부족전력의 공급)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이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전기 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35조(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 재생에너지지구 조성을 위하여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라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임차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 및 관련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생에너지지구 이격거리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이격거리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재산(이하 “국·공유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②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로부터 국·공유재산등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매

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등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국·공유재산등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전력망지구 내에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산업지구 입주기업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산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산업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노력 및 지원)

① 산업지구 입주기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지구 입주기업이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43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원

제44조(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5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45조(인재의 양성·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수요와 연계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지역 내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입주기업에 필요한 신규 인력 공급 및 기존 인력 재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4. 입주기업의 인재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해외 우수 인재 양성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산업 및 입주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입주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목적 달성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공급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51조(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로 본다.

제5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5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련 연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제56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제2항에 따른 위원

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에 직접 규정된 규제

2. 노동·환경·안전 관련 법률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 및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
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 받은 경우
2.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5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투자 및 기업의 유치·촉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 또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9.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2.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11.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제60조(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관광사업 지원의 특례) 정부는 지역주민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균형,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6장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

제6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산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

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함)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산업지구 등에 대한 관리) ① 산업지구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본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에너지지구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64조(입주계약) ① 재생에너지지구(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산업지구(제6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지구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6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기업이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입주기업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② 입주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6조(건축물 등의 양도) ① 입주기업이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8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9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관리기관은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업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0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66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건축물등을 양

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67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68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

제71조(토지의 분할 등) ①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 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의 산정과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73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 및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5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44조 및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사업시행자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임직원
3. 지원센터의 임직원

4. 제7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64조제1항후단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5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특례를 계속 이용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

5. 제7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3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재생에너지자립단지
-----	----------------------------------	-----------

제3조(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동, 환경, 안전 관련 법률

번호	법령명	분야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노동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
4	고용보험법	노동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
6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
8	공휴일에 관한 법률	노동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
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
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노동
12	근로기준법	노동
13	근로복지기본법	노동
1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
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

번호	법령명	분야
19	노동위원회법	노동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
22	선박직원법	노동
23	선원법	노동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
25	임금채권보장법	노동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노동
28	직업안정법	노동
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30	최저임금법	노동
3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안전
33	건축물관리법	안전
34	건축법	안전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36	광산안전법	안전
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38	교통안전법	안전
39	궤도운송법	안전
40	기계설비법	안전
41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4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안전
43	디지털의료제품법	안전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전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4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전
4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전
4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안전
50	선박법	안전
51	선박안전법	안전
5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전
5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54	소방시설공사법	안전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5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안전
57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5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안전

번호	법령명	분야
6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6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안전
63	식품안전기본법	안전
64	식품위생법	안전
6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안전
6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안전
6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68	약사법	안전
6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전
70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7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7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73	위생용품 관리법	안전
74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76	의료기기법	안전
7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안전
7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안전
79	자동차관리법	안전
80	전기공사업법	안전
81	전기안전관리법	안전
82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83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전
8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8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8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87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8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전
8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9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안전
92	항공사업법	안전
93	항공안전법	안전
94	항로표지법	안전
95	항만법	안전
96	항만안전특별법	안전
97	해사안전기본법	안전
98	해상교통안전법	안전
9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100	해운법	안전

번호	법령명	분야
101	화장품법	안전
1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1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10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1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10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10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10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111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1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113	먹는물관리법	환경
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115	물환경보전법	환경
1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1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1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19	석면안전관리법	환경
120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121	습지보전법	환경
122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
123	악취방지법	환경
1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2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2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환경
12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
1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12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1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13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1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133	지하수법	환경
13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135	폐기물관리법	환경
13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1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3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1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4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환경

번호	법령명	분야
14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환경
14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
144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145	화학물질관리법	환경
1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
148	환경보건법	환경
14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5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15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